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호대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367호

다. 제출일자 : 2019. 1. 31.

라. 회부일자 : 2019. 2. 7.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255호

다. 제출일자 : 2021. 2. 16.

라. 회부일자 : 2021. 4. 6.

II. 제안사유

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안

- 현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하고자 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주차장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함

Ⅲ. 주요내용

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
록 함. (안 제7조제1항제13호 신설)

Ⅳ. 참고사항

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12. ~ 2019.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부결

-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 부상자는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상이자에 한해 감면 적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 ⇒ 6·25전쟁(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경찰공무원, 민간인)
-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본인)의 약 40%)에 대해 요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면제할 경우 세입 감소분 10%이상 증가 예상
 - ※ 연 주차요금 감면액이 약 100억 원(주차요금 수입의 약 23.8%)이고, 추가 감면 및 면제대상 확대할 경우 연 10억 원 이상 추가 세입감소 예상
- 주차요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재원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재투자되는 바, 참전유공자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으로 지원 필요

1) 주차계획과-1927호(2019.2.14.)

-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감면 확대는 주차수요 유발 효과로 이어져 주차수요 억제 정책과 상충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9. ~ 2021. 4. 16.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²⁾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의하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침

2) 주차계획과-4321호(2021.4.12.)

- 우선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 및 서울시 타기관(시립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방안 추진
 - ※ 병역명문가 선정('21. 2월 기준) : 서울시 1,198가문(전국 6,395가문)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³⁾은 현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80%를 할인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한편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주차장법」 제9조⁴⁾ 및 제14조⁵⁾에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노외 및 노상주차장) 이용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경우 80%를 할인해주고 있고, 각 대상별 ‘20년

3) 동 개정조례안 발의 당시 주차요금 80% 할인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으나, 그 후 의상자('19.5.2. 시행)와 독립유공자('19.9.26. 시행)가 추가로 할인대상에 포함됨

4)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략>

5)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용건수는 114,840건(26억 56백만원)이며, 21억 48백만원이 감면된 5억 7백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음

※ 참고 : 2020년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

(단위 : 건/천원)

감면대상	2020년			
	건 수	부과금액(A)	감면금액(B)	실제납부(A-B)
계	114,840	2,655,599	2,148,427	507,172
장애인	100,863	2,352,713	1,903,238	449,475
국가유공상이자	13,149	276,132	223,575	52,5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16	26,245	21,206	5,039
의상자 ⁶⁾	3	26	21	5
독립유공자 ⁷⁾	9	483	387	96

※ 참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감면 규정 일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서울특별시조례 제7113호, 2019. 5. 2., 일부개정 시행

7) 서울특별시조례 제7325호, 2019. 9. 26., 일부개정 시행

-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80% 감면토록 하는 것은 복지 및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해되나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이 면제될 경우 공영 주차장이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5억 7백만원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에 공헌한 바에 대한 예우와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고, 서울시 참전유공자의 99.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⁸⁾이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다양한 유공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 할인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볼 수 있음
- 다만, 장애인 및 상이자 등과의 형평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 면제보다는 주차요금 할인 방안도입과 그에 따른 적정 할인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8) 서울시 참전유공자 등록현황

(2021.3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64세 미만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합계	48,576	0	379	19,113	13,605	2,551	7,585	4,802	514	27
비율	100.0	0.0	0.8	39.3	28.0	5.3	15.6	9.9	1.1	0.1

2. 성흙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15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 2조9)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이하 예우대상자)”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며, '20년말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 1,198가문 5,992명이 등록되어 있음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참고 : 병역명문가 현황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04년
가문 수	1,198	187	157	138	82	634
병역이행자	5,992	917	793	712	445	3,125

- 서울시는 “예우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경우 각 자치구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어 “예우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참고 : 자치구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 현황

구 분	요금 감면 적용			미적용
	50%	30%	20%	
자 치 구	도봉, 종로	강서, 관악, 금천, 노원, 동작, 성북, 중랑	강북, 구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강남, 강동, 광진, 성동, 용산, 은평, 중구
자치구 수	2	7	9	7

- 동 개정조례안은 3代가 국가에 기여한 “예우대상자”에 대해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2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 참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감면 규정 일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향후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점, 그리고 “예우대상자”에 대한 혜택으로 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요

청하는 서울지방병무청의 관련조례 개정 요청¹⁰⁾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비율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현행 조례에서도 국가에 기여한 여러 종류의 대상자마다 감면비율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비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추후 필요하다 할 것임

10)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923호(2021.1.28.)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및 관련 개별조례 개정 협조요청